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06호 2016. 12. 22. (목)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531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정선군 조례 제2532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정선군 조례 제2533호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 6
- 정선군 조례 제2534호 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정선군 조례 제2535호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정선군 조례 제2536호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정선군 조례 제2537호 정선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정선군 조례 제2538호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 정선군 조례 제2539호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 정선군 조례 제2540호 정선군 재단법인 3·3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 정선군 조례 제2541호 정선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 정선군 조례 제2542호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 정선군 조례 제2543호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38
- 정선군 조례 제2544호 정선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42
- 정선군 조례 제2545호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45
- 정선군 조례 제2546호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48
- 정선군 조례 제2547호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 정선군 조례 제2548호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56
- 정선군 조례 제2549호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58
- 정선군 조례 제2550호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277호 정선군 공무원행동강령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 63
- 정선군 규칙 제1278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82
- 정선군 규칙 제1279호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8
- 정선군 규칙 제1280호 정선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8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4, FAX:560-2592)

조 례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31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제21조제2항 중 “둔다” 를 “설치한다” 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9조” 를 “「지역보건법」 제11조” 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106조” 를 “법 제115조” 로 한다.

별표 1의 증산보건진료소 위치란 중 “남면 무릉3로 12” 를 “남면 도원2길 27로”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속기간) 동계올림픽지원단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설치) ① 군에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3조제1항,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p> <p>② 군 의료 취약지역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둔다.</p> <p>③ (생략)</p>	<p>제2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p> <p>② ----- ----- 설치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3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서 정한 사무를 관장한다.</p> <p>② (생략)</p>	<p>제23조(소관사무) ① ----- 「지역보건법」 제11조-----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0조(설치) ① 읍·면에는 법 제10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편의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2조의 사무를 관장하는 읍·면 출장소(이하"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생략)</p>	<p>제30조(설치) ① ----- 법 제115조----- ----- -----.</p> <p>② (현행과 같음)</p>

개 정 이 유

-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한시지구 존속기간 연장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정비 및 증산보건진료소 이전에 따른 위치 수정

주 요 내 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정비(안 제21조, 안 제23조, 안 제30조)
- 한시지구 존속기간을 연장(부칙)
- 별표 1의 증산보건진료소 위치를 수정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32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94명” 을 “595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83명” 을 “584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중 10명(동계올림픽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3]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595	595				
정무직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570	570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24	11	2	1	1	9
6급 이하 계	541	541				
전문경력관 계	1	1				
연구직 계	4	4				
연구관						
연구사	4	4				
지도직 계	20	20				
지도관	3			3		
지도사	17	1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9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83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595명-----. 1. ----- 584명 2. (현행과 같음)

개 정 이 유

-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을 증원하고자 함.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지원단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594명→595명(증 1명)
 - . 집행기관의 총수 : 583명→584명(증 1명)
 -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변동 없음)
-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별표 3)
 - 4급·5급 : 본청(2), 직속기관(1) : 변동없음
 - 5급 : 본청(11), 의회(2), 직속기관(1), 사업소(1), 읍면(9) : 변동없음
 - 6급이하 : (540) ⇒ (541) (증 1명)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33호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2조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6.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1. 개최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성명
- 3. 심의사항
- 4. 진행사항
- 5. 위원발언 요지
- 6. 심의결과
- 7.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한다.

제12조(회의내용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이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였을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 정 이 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2016.1.19. 전부개정 후 2016.9.1.부터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 개정법령을 반영하여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제명을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에서 「정선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조례」로 변경함
-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 (안 제2조)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심의 (신설 안 제3조)
- 부동산가격공시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안 제7조)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34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 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감정평가법인</u>에 의뢰한다.</p>	<p>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 ----- ----- ----- 「<u>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u>」----- <u>감정평가업자</u>-----.</p>

개 정 이 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규제개선사례 50선 정비 대상으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였으나,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 대상을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65조)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35호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등) ① 정선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른 조례에서 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② 「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을 “여성청소년과장” 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회의 설치) ① 정선군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 실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 3. 다문화가족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정선군의회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p>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⑤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p>	<p>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등) ① 정선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p>
<p>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삭 제></p>
<p>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p>	<p><삭 제></p>

<p><u>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u>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 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u> <u>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삭 제></p>
<p><u>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u>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삭 제></p>
<p><u>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u> <u>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u> <u>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u> <u>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u> <u>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u> <u>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u> 	<p><삭 제></p>

개 정 이 유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기능을 정선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함. (안 제6조)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36호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를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를 “제5조에 따라” 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평생교육기관에” 를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참여자와 학습동아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지~~원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시설, 장소, 기 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 다.

③ 군수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 다.

④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지원 기준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 을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으로 하고, “구성한다” 를 “구성하 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두며” 를 “1명을 두되” 로, “평생교육 업무소관” 을 “평생교육업무”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 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직무를 수행” 을 “직무를 수행”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하고” 를 “하되” 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 다” 를 “연임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경우에는” 을 “때에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 를 “필요한” 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범위 안에서” 을 “범위에서” 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아니한다” 를 “아니하다” 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를 “제1항에” 로 한다.

제21조 중 “줄” 을 “교부 할” 로,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에게” 를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로 한다.

제22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u>	<u>정선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평생교육법</u> 」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제5조에 따라</u> ----- -----.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u>군수가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u> 4. (생략)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 -----. 1. ~ 2. (현행과 같음) 3. --- <u>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u> ----- 4. (현행과 같음)
제5조(경비 지원) <u>군수는 제4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① <u>군수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참여자와 학습동아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지원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시설, 장소, 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u> ② <u>군수는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u> ③ <u>군수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u>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4. 기타 평생교육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략)

④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군의 평생교육 업무소관 담당이 된다.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정선군 사무의 민

위에서 강사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지원 기준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회의에 부치는 --

제7조(구성) ①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1명을 두되-----
----- 평생교육업무 -----.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 ----- 대표하고, 협의
회의 직무-----.

② ----- 직
무를 수행-----.

제9조(임기) ① ----- 하되-----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
기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
때에는 -----
-----.

② ----- 필요
한-----.

제13조(수당 등) -----
----- 별
위에서-----.

- 아니하다.

제16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u>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에게</u> 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21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 ----- <u>교부 할</u> --- <u>우수 수료자에 대하여</u> ----- -----.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u> 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 <u>필요한</u> ----- -----.

개 정 이 유

- 문자해득(文字解得)교육(문해교육)은 사회변화에 맞게 단순한 문자해득 능력을 넘어 모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 평생학습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배움과 나눔의 실천을 위하여 평생교육 기관 및 민간부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및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평생교육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을 평생교육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3호)
- 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37호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u> <u>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u> <u>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u> 	<p><삭 제></p>

개 정 이 유

- ‘16년 행정자치부의 적합성 검토를 거쳐 확정된 정비과제로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 삭제(안 제11조)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38호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야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부담금의 강제징수)” 를 “(부담금의 징수)”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위원회 또는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야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야한다.
제5조(가로수위원회) ①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심 의·자문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를 심의하는 정선군가 로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 에 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	<삭 제>

<p><u>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u>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환경산립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u></p> <p><u>1. 정선군의회 의원</u></p> <p><u>2.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p> <p><u>3. 가로수(녹지, 조경 포함)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u></p> <p><u>4. 지역의 군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자</u></p> <p><u>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u></p> <p><u>⑤ 간사는 가로수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u></p> <p><u>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u>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p><u>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u></p> <p><u>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u></p> <p><u>3. 위원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켰을 때</u></p> <p><u>4.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u></p> <p><u>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u></p> <p><u>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제18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② (생략)</p> <p><u>③ 군수는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u></p>	<p>제18조(부담금의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p> <p><삭제></p>
---	---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부합하도록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폐지 및 2016년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는 위반 될 소지가 있는 해당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가로수위원회 폐지에 따른 해당 조항 수정 및 삭제 함(안 제4조, 제5조)
-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 함(안 제18조)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39호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등록 해지)” 를 “(등록 취소)”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해지” 를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 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 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운영자는 군수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등록 해지) ①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 등록된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운영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u></p> <p>1. <u>공공질서 유지 또는 독서문화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u></p> <p>2. <u>설치기준 및 등록조건을 위반한 경우</u></p> <p>3. <u>그 밖에 폐관 등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u></p> <p><신 설></p>	<p>제8조(등록 취소) ① ----- ----- -----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u>-. -----</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운영자는 <u>군수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u></p>

개 정 이 유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정선군 작은도서관 등록해지 규제와 관련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 및 삭제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조문을 법률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 하고 등록취소 시 등록증을 반납하는 내용을 명시 함(안 제8조)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40호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를 같은 항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도시재생관련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출연금 등) ① ~ ③ (생 략)</p> <p>④ 군수는 출연금 외에 재단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1. 1995년 3월3일 주민 생존권 투쟁 정신의 계승·선양 및 각종 기념사업</p> <p>2. 지역주민 공동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문화사업</p> <p><신 설></p> <p>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2조(출연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p> <p>1.·2. (현행과 같음)</p> <p>3. 도시재생관련 사업</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개 정 이 유

-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군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신설(안 제2조)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41호

정선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를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장·시장활성화구역” 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으로, “등록” 을 “신고”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로, “50개” 를 “30개”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시장·시장활성화구역” 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으로, “시장·시장활성화구역” 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구역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제4조제3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시장안” 을 “전통시장안”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시장구역” 을 “전통시장구역” 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인정시장의 인정” 을 “전통시장의 인정” 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기준 등)” 을 “(전통시장의 기준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을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 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을 “(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정시장구역” 을 “전통시장구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정시장” 을 각각 “전통시장” 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를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를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시장” 을 “전통시장” 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를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정시장” 을 “전통시장” 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2조의 제목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를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활성화구역” 을 “상권활성화구역” 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군수는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를 따른다.

제14조의 제목 “(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를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활성화구역” 을 “상권활성화구역” 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을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로 한다.

제15조 중 “신청” 을 “신고” 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등록)” 을 “(임시시장의 신고)” 로 하고, 같은 조 중 “등록하여야” 를 “신고하여야” 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등록취소)” 를 “(임시시장의 신고취소)”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 을 “신고를” 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 를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시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인정된 전통시장을 이 조례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u></p>	<p><u>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밖에 정선군 관내 재래시장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p>
<p>1. "상인"이라 함은 <u>시장·시장활성화구역</u>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p>	<p>1. ----- <u>시장·상권활성화구역</u> ----- ----- -----.</p>
<p>2. (생 략)</p>	<p>2. (현행과 같음)</p>
<p>3. "임시시장"이라 함은 「<u>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u>등록</u>한 시장을 말한다.</p>	<p>3. -----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 ----- <u>신고</u>----- --.</p>
<p>4. "상점가"라 함은 「<u>유통산업발전법</u>」 제2조제6호 및 「<u>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u>」 제5조에 의거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u>50개</u>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p>	<p>4. ----- 「<u>유통산업발전법</u>」 제2조제7호 ----- ----- ----- ----- ----- <u>30개</u> ----- -----.</p>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생략)

7.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생략)

제3조(시장의 구역) ①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③ (생략)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② (생략)

③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⑤ (생략)

5. -----

----- 시장·상권활성화구역 -----
-----.

6. (현행과 같음)

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 시장·상권활성화구역 -----
-----.

8.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구역) ①시장구역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 3. (생 략)

4. 시장안의 도로 : 가능한 경우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지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인정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전통시장안-----
-----.

5. ----- 전통시장구역-----
-----.

② (현행과 같음)

제2장 전통시장의 인정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전통시장구역-----

-----.

② (현행과 같음)

③전통시장-----전통시장-----

----- 전통시장 -----.

<p>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② (생략)</p> <p>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 와 같다.</p> <p>1. ~ 5. (생략)</p> <p>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군수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 시장----- -.</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전통시장----- -----.</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시장활성화구역 지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p>
<p>제11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 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p>	<p>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 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구역 을 말한다.</p>
<p>제12조(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 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p>	<p>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 ----- -----.</p>
<p>제13조(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 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 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p>	<p>제13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군수는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때 에는 법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를 따른다.</p>
<p>제14조(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시장활성화구역 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p>	<p>제14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 상권활성화구역- -----.</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p>
<p>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p>	<p>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 ----- 신고-----.</p>

<p>수 있다.</p> <p>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군수에게 <u>등록하여야</u> 한다.</p> <p>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u>등록을 취소</u>할 수 있다.</p> <p>1. ~ 4. (생 략)</p> <p>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u>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u>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p> <p>② (생 략)</p>	<p>제16조(임시시장의 신고) ----- ----- ----- --- <u>신고하여야</u> ---.</p> <p>제18조(임시시장의 신고취소) ----- ----- <u>신고를</u>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u>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u> ----- -----.</p> <p>② (현행과 같음)</p>
--	--

개 정 이 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재래시장’ 명칭을 ‘전통시장’ 으로 변경함.(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 ‘인정시장’ 명칭을 ‘전통시장’ 으로 변경함.(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 ‘시장활성화구역’ 명칭을 ‘상권활성화구역’ 으로 변경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 에서 “신고” 로 완화함.(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42호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전기업” 을 “지방투자기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각각 전부” 를 “전부 또는 각각 ” 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라목 중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 을 “기업” 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 을 “기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이전기업” 을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1년” 을 “3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군내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을 “군내에서 기업” 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을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타 시·도 이전기업” 을 “이전기업” 으로, “임대료보조금)” 을 “임대료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군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을 “(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조업” 을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으로, “20명” 을 “10명” 으로, “일정규모” 를 “군내에서 일정규모” 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요청)” 을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이전·신설·증설·창업기업을 말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원하는” 을 “지원받는” 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정선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8조, 제10조 및” 을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전기업과 창업기업이” 를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되, 그” 를 “환수결정을 할 경우 보조금의 환수” 로, “등 필요한 사항” 을 “등에 관한 세부사항” 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조례를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기업 및 민간 투자 자본의 효율적 유치와 지방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에 따른 지원으로 정선군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유치"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이전기업과 투자양해 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1. ----- ----- 지방투자 기업----- -----.
2.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시·도(도 외의 지역을 말한다)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던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군 권역으로 각각 전부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은 그 기업의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 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로 한다.	2. ----- ----- 전부 또는 각각 ----- -----.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8. "보조금"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전기업에 지원하	8. ----- -----

는 금액을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고용보조금: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

마. 교육훈련보조금: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

바. ~ 아. (생략)

9. "신설"이란 이전기업이 군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군내 기존기업은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군 권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0. "증설"이란 군내에서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1. "창업"이란 군내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2. "수도권 인접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도권과 인접한 광역 시·도의 시·군을 말한다. 다만, 제13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3. ~ 17. (생략)

제3조(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하여 본사 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조(군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기업-----

마. ----- 기업-----

바. ~ 아. (현행과 같음)

9. -----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 <단서 삭제>

10. ----- 3년 -----
----- .

11. ----- 군내에서 기업을 -----
----- . -----

<삭제>

13. ~ 17. (현행과 같음)

제3조(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
이전기업-----

임대료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10명 ----- 군내에서 일정규모 -----
----- .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p>	<p><삭 제></p>
<p>제1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⑦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p>	<p><삭 제></p>
<p>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18조(부담금의 분담 등) ① 군수는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그 부담금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18조(부담금의 분담 등) ① ----- 제7조 부터 제10조까지,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2조(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 ①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이전기업과 창업기업이</u> 지원받아 매입 또는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나. (생략)</p> <p>5.·6.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되, 그 기준 및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2조(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u> -----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5.·6. (현행과 같음)</p> <p>② ----- 환수결정을 할 경우 보조금의 환수 ----- ----- 등에 관한 세부사항-----.</p>

개 정 이 유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부적정에 대한 행정자치부 시정요구 내용을 반영하고자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 명칭 변경 및 목적 전부 개정(안 제1조)
 -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 정의 조문 일부 수정 (안 제2조제1호, 제2호, 제8호라목·마목, 제9호, 제10호)
- 창업의 범위를 군내에서 창업한 모든 기업으로 구체화(안 제2조제11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중복된 내용 삭제(안 제2조제12호)
- 이전기업에 대하여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신설(안 제4조)
- 지원 대상 업종 확대 운영(안 제4조)
 - 기존 “제조업”에서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
- 조 명칭변경 및 일부 문구에 대한 의미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자구 수정·보완
- 투자유치위원회 통합(안 제14조, 제16조, 제17조)
 -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폐지 또는 정비토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정요구 되어 정선군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43호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분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 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2. "정압기"란 가스분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 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도시가스 사용신청 승낙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나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미터 당 공급의무 가구수(난방용 계량기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 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6. "도시가스 공급규정"이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규정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사업자가 승인받은 규정을 말한다.
7.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40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8.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세대를 말한다.
9.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세대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보조금 재원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지원범위 및 규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가스분관 설치비
- 2. 정압기 설치비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등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

②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도시사가 고시한 시설분담기준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중 50퍼센트를 세대 및 시설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되는 세대에는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세대당 1회에 한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신청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세입자가 도시가스 공급 요청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과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자(傷痍者)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유족
-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 6. 사회복지시설(국가·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7. 군에 주소를 둔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 승낙미달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를 용자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실태조사 등의 행정지도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업무 목적의 설치 신청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도시가스공급 지원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선군 도시가스공급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 2. 보조금 지원비율 등과 관련된 사항
-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도시가스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

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1.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 2. 도시가스관련 전문가 및 교수
- 3. 가스관련 유관기관 및 군민단체 관계자
- 4. 도시가스 업무 관련 공무원
- 5. 도시가스관련 관심이 있는 군민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업무 담당부서의 도시가스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하거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 등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 부담, 그 밖에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과한 교부서를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목적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

환을 명할 수 있다.

- 1. 이 조례에 따른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4조(보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 사업자(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주 요 내 용

- 사업자에게 가스 본관, 정압기, 공급관 등 시설비의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5조)
- 지원대상 기준 및 도시가스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보조지급 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방법, 그 밖의 조건 등 보조금 교부결정 사항 규정(안 제11조)
- 보조금 목적외 사용금지 및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규정(안 제13조)
- 보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 규정 마련(안 제14조)
 - ※ 수용가구 보조금 평균 세대당 800천원으로 산정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44호

정선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를 “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도로법」 제1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로, “대한 사항” 을 “필요한 사항”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로법 제2조” 를 “「도로법」 제2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을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로,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로점용자가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를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 중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u>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u>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u>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u>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u>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p> <p>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u>도로법 제40조의 규정</u>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p> <p>제3조(과태료) ① <u>군수는</u>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1. <u>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u></p> <p>2. <u>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u></p> <p>3. <u>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등을 작업하는 행위</u></p> <p>4. <u>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u></p> <p>② <u>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③ <u>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u></p> <p>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u>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u></p> <p>제1조(목적) ----- 「<u>도로법</u>」 제1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 ----- <u>필요한 사항</u>-----.</p> <p>제2조(용어의 정의) ① ----- ----- 「<u>도로법</u>」 제2조 ----- -----.</p> <p>② ----- 「<u>도로법</u>」 제61조 및 「<u>농어촌도로 정비법</u>」 제18조에 따라 ----- <u>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u> ----- -----.</p> <p>제3조(과태료) ① <u>도로점용자가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u></p> <p>1. <u>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u></p> <p>2. <u>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u></p> <p><삭 제></p> <p><삭 제></p> <p>② <u>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u> ----- -----.</p> <p><삭 제></p> <p>제4조(규칙) ----- <u>필요</u>----- -----.</p>

개 정 이 유

- 「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의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일부 개정하고, 위임 규정을 초과하여 규정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해당조항 수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해당 조항 삭제함(안 제3조)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45호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회 운영은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p> <p><신설></p> <p>② (생략)</p>	<p>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 운영은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p> <p>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선군의회에서 추천(2명 이내)하는 소속 군의원 2. 장애인·노인·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의 활동 경력을 갖춘 자(각 분야별 2명) 3. 교통·복지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p>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삭제></p>
<p>제6조(위원 해촉)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삭제></p>
<p>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삭제></p>
<p>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연중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p>	<p><삭제></p>

<p>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의 업무를 맡은 담당으로 한다.</p> <p>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제9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전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p> <p>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p> <p>제10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정선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보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생략)</p> <p>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수요·운행 대수·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운행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p>	<p><삭제></p> <p><삭제></p> <p>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삭제></p>
---	--

개 정 이 유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3년간 미 개최 위원회 대해 통폐합을 추진하고,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등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상위법령에 합치되지 않아 교통약자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정비코자 함.

주 요 내 용

- 위원회 운영을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안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해촉 등 삭제(안 제5조~10조)
- 상위법령에 합치되지 않은 항목 삭제(안 제14조 ②항)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46호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 을 부과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소유차량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제5조(주차 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시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시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는 제1항을 준용하되, 그 표시상단에 정선군 또는 관리수탁 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관리위탁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자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 선정은 경쟁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3.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4.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③ 군수는 선정된 관리수탁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 내 차량 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시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하며,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회사와 손해보험 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관리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과 지출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탁료 산출시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④ 제7조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1. 제7조제1항제1호	수익금	군수가 정하는 방법
2. 경쟁입찰	낙찰금액	3개월단위 선납
3. 수의계약	계약금액	3개월단위 선납

제9조(관리감독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현장 점검·조사할 수 있으며, 위탁 사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련 기계를 조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 불이행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수시로 점검·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조사이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조치결과를 군수가 정한 기일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군수에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시에 정한 주차장 입장료, 주차권 및 운영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차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하여야 한다.

1. 관리수탁자가 주차장관련 법령·조례 및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여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수탁 받은 공영주차장의 위탁 수입을 횡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또는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

②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7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위탁료 납부를 2회 이상 지연하여 납부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현장 점검·조사를 거부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주차장 이용료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6. 기타 군수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주차장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12조(주차장의 설치 허가권자) 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당해 도시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건폐율: 100분의 90이하
- 2. 용적율: 1천500퍼센트 이하
-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이하
 -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2배. 다만, 1. 8배 미만인 경우에는 1. 8배로 한다.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14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1.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
 -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환부한다.
- 1. 회수주차권: 잔여대수에 대한 요금
 - 2. 정기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15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건축물부설주차장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

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 및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때 예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영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및 당해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리

제19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10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 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20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된 총 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

제21조(화물하역 주차장 설치규모)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화물을 하역하거나 그 밖에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

차대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1대로 한다.

제22조(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23조(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영 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일반의 이용에 제공)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군수는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5조(과징금 처분) ①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한 경과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 정 이 유

-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경하고,
- 「주차장법」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주차장의 요금부과, 감면, 주차거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노상주차장의 설치 허가권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주차전용건축물의 견폐율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5조)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47호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개월” 을 “2개월”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1.·2. (생 략)	제7조(결산보고 등) ----- ----- 2개월 ----- ----- 1.·2. (현행과 같음)

개 정 이 유

- 상위법(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실적보고 기한 조문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주관단체의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를 2개월 이내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7조)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48호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를 “정선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선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20인”을 “1명을 포함한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역보건의료계획의시행”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u></p>	<p><u>정선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u>에 의하여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지역보건법시행령</u>」 제3조에 따라 정선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p>
<p>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u>1인</u>을 포함한 <u>20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 략)</p> <p>③ 위원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 4. (생 략)</p>	<p>제2조(구성) ① ----- <u>1명</u>을 포함한 <u>20명</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각 호의 어느 하나</u>-----</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u>각호</u>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p> <p>1. · 2. (생 략)</p> <p>3. <u>지역보건의료계획의시행</u>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p> <p>4. <u>기타</u>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3조(기능) ----- <u>각 호</u>-----</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u> -----</p> <p>4. <u>그 밖에</u> -----</p>
<p>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u>1인</u>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p>	<p>제6조(간사) ----- <u>1명</u>-----</p>
<p>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7조(수당 및 여비) ----- <u>별 위</u>-----</p>
<p>제8조(운영규정) <u>기타</u>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8조(운영규정) <u>그 밖에</u> -----</p>

개 정 이 유

- 「지역보건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선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인용 조문 “제2조” 를 “제3조” 로 변경 함(안 제1조)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49호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를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을 “「식품위생법」” 으로,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식품진흥 기금” 을 “제89조에 따라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47조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선군식품진흥기금” 을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으로,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65조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명예감시원” 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식품위생법시행령” 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으로, “제42조” 를 “제61조” 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정선군재무회계규칙” 을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인” 을 “1명” 으로, “7인이내” 를 “7명 이내”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며, 같은 항 중 “자” 를 각각 “사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인” 을 “1명”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통할한다” 를 “총괄한다” 로 한다.

제9조 중 “범위안에서 정선 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 를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 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40일전” 을 “40일 전” 으로 한다.

제12조 중 “80일이내” 를 “80일 이내” 로 한다.

제13조 중 “영 제7조” 를 “영 제21조” 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정선군재무회계규칙” 을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으로 한다.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u></p>	<p><u>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식품위생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식품진흥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식품위생법</u>」----- 제89조에 따라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p> <p>2.·3.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 <u>제47조제1항에 따라</u> ----- -----.</p> <p>2.·3.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금의 재원) <u>정선군식품진흥기금</u>(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u>각호</u>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p> <p>2. (생 략)</p> <p>3. <u>기타</u> 수입금</p>	<p>제3조(기금의 재원)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 <u>각 호</u>-----.</p> <p>1. -- <u>제65조에 따라</u> -----</p> <p>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의</u> ---</p>
<p>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u>각호</u>의 용도에 사용한다.</p>	<p>제4조(기금의 용도) ① ----- <u>각 호</u>----- -.</p>

<p>1. ~ 3. (생 략)</p> <p>4.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p> <p>5. · 6. (생 략)</p> <p>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u>식품위생법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에서 정하는 사업</p> <p>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② (생 략)</p> <p>③ 기금의 출납에 대하여는 <u>정선군재무회계규칙</u>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생 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생 략)</p> <p>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p> <p>④ (생 략)</p> <p>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주사가 된다.</p> <p>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2. (생 략)</p> <p>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②·③ (생 략)</p> <p>제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p> <p>② (생 략)</p> <p>제9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정선 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p> <p>5. · 6. (현행과 같음)</p> <p>7. 그 밖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 ---</p> <p>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p> <p>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1명----- 7명 이내----- -----.</p> <p>③ ----- ----- 각 호의 어느 하나--- 사람----- -----.</p> <p>1. (현행과 같음)</p> <p>2. ----- 사람 ----- ----- 사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1명----- -----.</p> <p>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 각 호-----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그 밖에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 ---- 통할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수당등의 지급) ----- -----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 -----.</p> <p>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 각 호----- -----.</p>
---	--

<p>1. ~ 3. (생 략)</p> <p>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기금결산)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 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용자대상) 기금의 용자대상은 정선군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p> <p>제15조(용자금의 위탁관리) ① (생 략)</p> <p>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용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생 략)</p> <p>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p> <p>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그 밖에 -----</p> <p>③ ----- 40일 전----- -----.</p> <p>제12조(기금결산) ----- 80일 이내----- ----- -----.</p> <p>제13조(용자대상) ----- 영 제21조-----.</p> <p>제15조(용자금의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제1항에 따라 ----- ----- -.</p> <p>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p> <p>제18조(시행규칙) ----- 필요한----- -----.</p>
---	--

개 정 이 유

-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통해 정선군 식품진흥기금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제명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를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로 개정
-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법조항 반영(안1조, 안2조, 안3조, 안4조, 안13조)
 -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단어 변경(명예감시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휘 정비 등

제234회 정선군의회(2016. 12. 5.)에서 의결된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50호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삭 제>

개 정 이 유

-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중 상위법령(수도법)에 위배되고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주 요 내 용

- 상위법령(『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위배 되는 조항 삭제(안 제16조)

규 칙

2016년도 제10회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선군 공무원행동강령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277호

정선군 공무원행동강령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

정선군 공무원행동강령 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정선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질의민원, 고충민원에 관한 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아.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되는 개인이나 단체

-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관련공무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 라.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공무원
 -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정선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제1항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군수

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는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차량·선박·항공기·건설중기·청사·관사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 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군수가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 [별표 1]에서 정한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금품 등 수수의 신고) 공무원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

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⑦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⑧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 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칙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군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군수 및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1조(수수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하며,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8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⑤ 제4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 제22조(교육) ① 군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 이 규칙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정선군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청탁방지담당관을 겸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정선군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를 말한다)을 준용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세부지침) 군수는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4조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다.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른다. 다만, 임용관련법령에서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관련법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여비관련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임용관련법령, 보수관련법령 및 여비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라.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주소		연락처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3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input type="checkbox"/>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input type="checkbox"/> 회의				
활동 유형	<input type="checkbox"/> 강의, 강연 <input type="checkbox"/>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input type="checkbox"/> 기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20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시 분 ~ 시 분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 [별지 제5호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금전 차용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부동산 대여

대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6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	---

신고취지 및 이유	
-----------	--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	-----------

비고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자

○○○장

귀하

■ [별지 제7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10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개 정 이 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6.9.28.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법령을 반영하여 정선군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규칙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안 제14조)
 -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지 못하고,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지 못함.(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포함)
 - 공무원은 일정한 경우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안 제15조)
 -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으로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함.
 - . 4급 이상 30만원 / 5급 이하 20만원 등 (1시간 당)
 - 제한 횟수를 초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수수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안 제21조)
 - 공무원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군수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함.

2016년도 제10회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278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증원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등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을 조정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별표)
 - 총 594명 ⇒ 총 595명 (증1명)
- 조정내역
 - 분야별 : 감염병 전담 인력보강 (증1명)
 - 부서별 : 보건소 (증1명) ⇒ 감염병관리담당 신설

[별표]									
정선군지방공무원직렬별정원표(제2조관련)									
직종별	직급별	직 렬 별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합 계			595	288	11	89	23	90	94
정 무 직			1	1					
일 반 직			570	282	11	70	23	90	94
지 도 직			20	3	0	17	0	0	0
연 구 직			4	2	0	2	0	0	0
정 무 직			1	1					
일	4급	지방서기관	1	1					
	4급·5급	지방서기관·행정사무관	2	2					
		지방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시설사무관	0						
		지방기술서기관·보건·간호·의료기술사무관	1			1			
	5급	소 계	24	11	2	1	1	4	5
		행정	5	3	2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시설	4	4					
		행정·농업	1	1					
		행정·환경·녹지	1	1					
		행정·환경·시설·공업	1				1		
		행정·농업·사회복지·시설	6					4	2
행정·농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의무	1			1					
반	소 계	131	73	3	12	5	18	20	
	행 정	47	28	3		1	6	9	
	세 무	3	3						
	농 업	3	3						
	6급	녹 지	2	2					
	시 설	10	10						
	환 경	1	1						
	사회복지	1					1		
	행정·세무	5	3				2		
	행정·사회복지	7	4				2	1	
	행정·농업	5	1					4	

일 반 직	6급	행정·녹지	1	1					
		행정·전산	2	1			1		
		행정·공업	2	2					
		행정·보건	1			1			
		보건·식품위생·간호·의료기술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5	4				1	
		농업·수의	1	1					
		농업·시설	1	1					
		농업·시설·녹지						3	
		시설·공업	1				1		
		공업·농촌지도사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녹지						1	
		행정·농업·사회복지	2					1	1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환경·보건	1				1		
		행정·농업·시설·녹지	5						5
		방송통신·전산	1	1					
		보건·간호·의기	6			6			
	보건진료	3			3				
	운전·기계운영	3	3						
	사무운영·시설관리	2	1			1			
7급	소 계	177	98	1	22	7	23	26	
	행 정	57	35	1			8	13	
	세 무	8	7					1	
	사회복지	9	4				3	2	
	전 산	1	1						
	공 업	1	1						
	농 업	3	3						
	녹 지	2	2						
	보 건	7			7				
	의료기술	3			3				
일	간 호	4			4				

반 직	7급	환 경	4	2			2		
		시 설	22	15			1	2	4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4	1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9	1				3	5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5	4			1		
		행정·시설	7	5			1	1	
		행정·방재	1	1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수의	2	2					
		의료기술·간호	1			1			
		보건·간호	1			1			
		보건진료	4			4			
		토목운영	1	1					
		통신운영	0						
		기계운영	3					2	1
	운 전	4	3		1				
	사무운영	2				1	1		
	운전·기계운영	1	1						
	통신운영·전기운영	1				1			
	사무운영·시설관리	1	1						
	8급	소 계	133	64	3	21	7	22	16
		행 정	31	18	1		1	6	5
		세 무	2	2					
사회복지		6	2				2	2	
전 산		1	1						
공 업		4	2			2			
일	농 업	4	1				2	1	
	녹 지	3	3						
	보 건	0							
	의료기술	3			3				
	간 호	1			1				

2016년도 제10회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279호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역선도산업 또는 특화산업”을 “경제협력권산업 또는 주력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1.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다만, 건설업의 경우 별표 8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2.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 3.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4조제1항 중 “따른 이전기업”을 “따라 이전기업 등”으로, “별표 1,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이전기업이 산업단지(농공단지를 포함한다)”를 “이전기업 등이 산업단지”로, “별표 1, 별표 2”를 “별표 1”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전 상시고용이원 규모를 충족한 후 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다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군수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훈련의 목표
- 2. 교과목 및 내용
- 3.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 4. 교육훈련 기간(3개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
- 5. 교육훈련 방법
- 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

제7조의 제목 “(군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을 “(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내 기존기업” 을 “기업” 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요청)” 을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양면적” 을 “분양가능면적” 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단, 창업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범위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 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3. 유치시점부터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상시고용인원 10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지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한 경우로서 2개 이상의 기업의 합친 총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
- 4. 유치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내복귀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2개 이상의 해외진출기업이 집단지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로서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제9조제2항 중 “20퍼센트” 를 “40퍼센트” 로, “100억원(단, 창업은 60억원)” 을 “150억원(단, 창업은 300억원)”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 후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조금신청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산업단지(농공단지)” 를 “산업단지” 로, “업체로써” 를 “업체로서” 로, “20명” 을 “10명”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별표 6” 을 “별표 7” 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원금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이하 “이자”라 한다)” 를 “원금,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금액”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정산보고서” 를 “정산시점 1개월” 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⑥ 전액 지방비 지원 기업이 투자계획을 100퍼센트 이행하고 남은 유희부지를 분양하여 지식산업센터 또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입지보조금의 일부에 한해서만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 ⑦ 제2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⑧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자는 군수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 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중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규칙을 적용한다.

[별표 1]

타 시·도 이전기업 지원기준(제3조~제6조의2, 제13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계	도비	군비
부지매입보조금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15%	30	15	15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200억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40%	60	30	30
임대료보조금	지원기간 : 5년내	임대료×30%	10	5	5
투자보조금	대 기 업	투자비×10%	30	15	15
	중견기업	투자비×20%			
	중소기업	투자비×30%			
본사이전보조금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 원		10	5	5
교육훈련보조금	이전기업이 도내 거주자를 20명이 상 신규로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하는 경우	초과 인원 1명당 60만원 이하(6개월 범위)	10	5	5

- 주1) 지방비 부담비율은 도비 50퍼센트, 시군비 50퍼센트로 하되 지원한도액 안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주2) 수도권 이전기업 중 대기업의 경우 타 시·도 이전기업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주3) 기업투자촉진지구(투자유치 저조지역, 올림픽 특구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각 5% 지원비율 한도 상향하되,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 주4) <삭제>

[별표 3]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기준(제9조, 제13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계	도비	군비
중·대규모 이전·신설· 증설 지원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40%	80	40	40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50%	100	50	50
	상시고용인원1,000명 이상 이고 투자금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50%	300	150	150
중·대규모 창업기업 지원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20%	10	5	5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		20	10	10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기업		40	20	20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인 기업		60	30	30

- 주1) 군에서 별도로 선정한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5%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 주2)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 지원비율 한도 상향하되,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별표 7]

신설·증설투자 지원기준(제7조, 제13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단위 : 억원)		
			계	도비	군비
신설·증설 지원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이고 신규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20%	10	5	5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20	10	10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		40	20	20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		60	30	30

[별표 8] <신 설>

지원대상 건설업(제2조 관련)

구분	내 용	비고
업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 주1)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함.
- 주2)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
- 주3) 건축, 토목, 조경, 강구조물공사업 등 제조업 특성이 약한 업종은 제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①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p> <p>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 2제1항에 따른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p> <p>2. ~ 4. (생략)</p> <p>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지역선도산업 또는 특화산업의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장을 폐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이전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p> <p>제4조(투자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3조 및 제10조에 따른 이전기업의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되, 부지매입 비용은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1, 별표 2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5조(부지매입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산업단지(농공단지를 포함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 .</p> <p>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①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p> <p><삭 제></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경제협력권산업 또는 주력산업-----</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p> <p>1.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다만, 건설업의 경우 별표 8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2.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p> <p>3.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p> <p>제4조(투자보조금) ① ----- 따라 이전기업 등 ----- 별표 1-----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부지매입보조금) ① ----- 이 이전기업 등이 산업단지 -----</p>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 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 별표 2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② ~ ④ (생략)

<신설>

제7조(군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군내 기존기업이 신설·증설에 따른 부지매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별표 7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요청) ①·② (생략)

-----별표 1-----
-----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있다.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이원 규모를 충족한 후 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군수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의 목표
2. 교과목 및 내용
3.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4. 교육훈련 기간(3개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
5. 교육훈련 방법
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

제7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
----- 기업-----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분양공고 후 2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지구 지정일 현재 분양 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면적이 최소 33,000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④ ~ ⑥ (생략)

제9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범위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에게 별표 3과 같이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총 투자규모의 20퍼센트 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기업마다 최고 100억원 (단, 창업은 6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00억원(단, 창업은 6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보조금 지

③ -----

----- 분양가능면적 -----
-----.

1. 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단, 창업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범위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3. 유치시점부터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상시고용인원 10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한 경우로서 2개 이상의 기업의 합친 총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
4. 유치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내복귀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2개 이상의 해외진출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로써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② -----

----- 40퍼센트 -----
----- 150억원(단, 창업은 30억원) -----
----- . <단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④ -----

원여부와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기업은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10조(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① (생략)

② 조례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비보조금은 산업단지(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로써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업체로 한하며,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12조 (생략)

제13조(부담금의 분담 등)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도와 군의 부담금의 분담비율과 보조금의 세부 지급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단, 별표 5는 제외한다)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16조(보조금의 환수) ① 군수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 1.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지원: 다음 각 목중 큰 금액
 - 가. 매각대금(단,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 사업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 감정가 등 기준)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 (이하 “이자” 라 한다)

나. (생략)

2. ~ 4. (생략)

② (생략)

③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 인원을 완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미달률을 평균하여 그 비율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1. (생략)

2. 계획한 상시고용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미달

----- .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 후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산업단지 -----
----- 업체로서 -----
10명 -----
----- .

제11조·제12조 (현행과 같음)

제13조(부담금의 분담 등) ① -----

-----별표 7-----
----- . (단서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조금의 환수) ① -----

----- .

- 1. -----
가. -----
----- 원금,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금액

나.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

<p>률: (계획한 상시고용 인원-정산보고시의 상시고용 인원) / 계획한 상시고용 인원 × 100</p> <p>④·⑤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정산시점 1개월-----</p> <p>-----</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 전액 지방비 지원 기업이 투자계획을 100퍼센트 이행하고 남은 유휴부지를 분양하여 지식산업센터 또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입지보조금의 일부에 한해서만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따른다.</p> <p>⑦ 제2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p> <p>⑧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자는 군수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 예금 금리를 적용한다.</p>
--	--

개 정 이 유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규칙 명칭 변경
 -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중복된 내용 삭제(안 제2조제1호)
- 일부 문구에 대한 자구 수정·보완(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 부지매입보조금의 지원 범위 설정(안 제5조제1항)
 - 부지매입보조금이 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있도록 명시
-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신설(안 제6조의2, 별표 1)
- 중·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사항 구체화(안 제9조, 별표 3)
- 보조금 환수 기준 구체화(안 제16조)
- 별표 및 별지 서식 수정·보완 등

2016년도 제10회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선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280호

정선군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을 “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부과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를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과태료부과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산정방법	과태료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	1. 1㎡ 이하 2. 1㎡ 초과 시 1㎡이내 마다 10만원씩 더한 금액부과	5만원 2백만원 (상한액)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	1. 1㎡ 이하 2. 1㎡ 초과 시 1㎡이내 마다 10만원씩 더한 금액부과	10만원 1백50만원 (상한액)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선군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과태료의 <u>부과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u>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 ----- <u>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개 정 이 유

- 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의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일부 개정하고, 위임 규정을 초과하여 규정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1항 별표 개정